

#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진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7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4일  
발 의 자 : 정진술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권수정, 김기대, 김인제,  
김재형, 김정태, 김태수,  
김희걸, 박기열, 박기재,  
박상구, 박순규, 송아량,  
송재혁, 양민규, 이광호,  
이정인, 이준형, 장상기  
의원(18명)

## 1. 제안이유

-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청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을 청년인재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함(안 제10조의2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청년기본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의 제목 “(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운영)”을 “(청년인재정보의 수집·관리)”로 한다.

제1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데이터베이스 담당”을 “청년인재정보 수집·관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데이터베이스 운영”을 “청년인재정보의 수집·관리 및 수집된 정보의 보호 등”으로 한다.

-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고,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을 위원으로 추천하기 위하여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·관리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10조의2(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운영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추천할 청년들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·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데이터베이스 담당 부서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에서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</p>	<p>제10조의2(청년인재정보의 수집·관리)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고,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을 위원으로 추천하기 위하여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·관리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청년인재정보 수집·관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청년인재정보의 수집·관리 및 수집된 정보의 보호 등</u>----- -----.</p>